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대 상: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 **** / 03거31** / 남인* 외 391건
(붙임 내역서 참조)
- 공 고 내 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0. 1. 1.~2020. 1. 31. 우편 반송분)
- 공 고 기 간: 2020. 2. 3.~2020. 2. 18. (15일간)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중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606-7929)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과 [(042) 606-688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일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020년 2월 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illegible]